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09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정춘생 · 용혜인 · 한창민
손 술 · 윤종오 · 김재원
김준형 · 서왕진 · 전종덕
신장식 · 황운하 · 강경숙
김선민 · 차규근 · 이해민
정혜경 · 박은정 · 백선희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는데, 단독 출마로 경쟁자 없이 자동 당선되거나 거대 양당이 각각 한 명씩 공천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

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0조제2항 및 제191조제2항 등).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이하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한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현재 기초의원선거에서 선거구 당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참여를 통해 기초의회에서 다양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특정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거대 양당이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은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단서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 미만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같은 조 제3항에”를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로 한다.

제150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제19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항에 따라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 옆에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하여야 한다.

제15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하여야 한다.

제158조의3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하여야 한다.

제19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 각각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88조제2항”을 “제188조제3항”으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4조제1항 중 “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당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政黨은 선거에 있어 選舉區別로 選舉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所屬黨員을 候補者(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録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の 登録은 無效로 한다. 1. (생략) 2.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제1항 본문의 規定에 위반하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 ----- ----- ----- ----- ----- ----- ---있으며, <u>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 미만으로 추천하여야 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여 選舉區別로 選舉할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女性候補者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第48條(選舉權者의 候補者推薦)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人數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 11. (생략)

② ~ ④ (생략)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掲載順位 등) ① 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記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는 候補者의 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の 欄에 “無所屬”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치구·시·군의 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추천하
거나, 같은 조 제3항에-----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
者의 掲載順位 등) ① -----

-----하
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제19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
항에 따라 찬반투표를 실시하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④ _____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⑧ (생략)

제158조의3(선상투표)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

-----. 다만, 제19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하여야 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8조의3(선상투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
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 ⑭ (생략)

第190條(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
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생
략)

② 候補者登録마감시각에 候補者가 당해 選舉區에서 選舉할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거나 候補者登録마감후 選舉日 投票開始時刻까지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録이 無效로 되어 候補者數가 당해 選舉區에서 選舉할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選舉日에 그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신 설>

. 다만, 제19
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를 실시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용지
의 해당란에 기표하여야 한다.

⑥ ~ ⑭ (현행과 같음)

第190條(지역구지방의원당선
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현
행과 같음)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 각각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
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③ (생 략)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u>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u> ③ <u>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u>
---	---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 ①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當選人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第18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 國會)는 지체없이 當選人을 다시 決定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한다. ④ -----제188조제3항----- -----.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 ① ----- -----제1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② ~ ④ (현행과 같음)
--	---